

공 영 규 정

제 1 조 (사명)

1. 목적

행복나눔 (이하 '본사업소'라한다)는 이용자가 그 능력에 따라 자립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, 이용자의 신체의 상태 및 희망에 따라 환경을 고려하여 복지공구의 선정에 도움을 주어 복지공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, 이용자의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, 그 기능 측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운영의 방침

- 1) 복지공구의 제공은 이용자가 요양 간호 상태 등의 경감 혹은 악화의 방지 또는 요양 간호 상태가 되는 것의 예방 및 이용자를 보호하는 사람의 부담의 경감에 이바지하도록 적절히 실시한다.
- 2)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는 복지공구를 제공한다.
- 3) 제공하는 복지공구 질의 평가를 실시해 항상 그 개선을 꾀한다.

제 2 조 (이용계약에 관한 사항)

1. 계약기간

- 1)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
- 2)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2. 계약목적

지역사회의 정신적,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공구 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.

3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

가. 본 사업소에서 판매 및 대여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